

제3장

대회주최자 등록규정

제정	1997년 1월 1일	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1999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2000년 1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02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03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05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22년 1월 1일
개정	2009년 1월 1일	개정	2023년 1월 1일
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2024년 1월 1일

제1조 대회주최자 등록

- 1.1 자동차경기를 개최하려고 하는 대회주최자는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의 국제스포츠규정과 그에 기초한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의 국내스포츠규정 및 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KARA 에 등록하여야 한다.
- 1.2 등록은 본 규정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KARA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무국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본 규정의 각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조 대회주최자의 분류와 대회 공인비

대회주최자는 대회주최자 A, 대회주최자 B, 대회주최자 C로 분류되고, KARA의 권한 부여에 의거하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2.1 대회주최자 A는,
 - 2.1.1 FIA Championship, International 또는 ASIA Zone 등급 이하의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2 대회주최자 B는,
 - 2.2.1 컵, 트로피, 챌린지 등 2개 클래스 이상으로 구성된 국내 경기를 주최 할 수 있다.
 - 2.2.2 대회주최자 B가 주최하는 경기는 선수 라이선스 B, C 소지자 만이 참가하는 경기로 한정 한다.
 - 2.2.3 챔피언십 대회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고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없다.
- 2.3 대회주최자 C는,
 - 2.3.1 서킷 레이스 중 1개 클래스로만 이루어진 국내 경기를 주최할 수 있으며, 카트, 드리프트, 드래그, 짐카나 경기 등 단일 종목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3.2 복수의 클래스가 포함된 경기를 주최하고자 할 때에는 KARA 사무국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모터스포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
 - 2.3.3 챔피언십 대회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고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없다.

2.4 타 ASN에 의해 경기 시리즈가 승인된 국제대회의 한국 개최 시 공인신청자는 필요한 서류와 보증금을 대회개최 9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대회 완료 후 반환되거나 경기 취소, 일자 및 장소 변경 등으로 FIA 및 KARA에 의한 페널티 발생시 일부 또는 전액 반환되지 않는다. 만약, 페널티 금액이 보증금 보다 많을 경우 추가적으로 페널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5 대회 주최자 등급별 개최 가능 대회

등급	해당대회
A	FIA Championship 또는 FIA Cup 대회, International 또는 Zone 대회, 국내 챔피언십 대회(서킷)
B	컵, 트로피, 챌린지 등 국내 대회
C	서킷 레이스 1개 클래스, 카트, 드리프트, 드래그, 짐카나, 디지털 (eSports) 등 서킷 외 단일 종목 대회

2.5 대회공인의 신청시 대회공인비는 KARA가 별도로 정한다. 단, 대회 공인 취소에 대해 국가보안상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를 제외하고 공인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3조 대회주최자의 신청자격

- 3.1 모터스포츠에 공헌하는 사업목적을 갖는 법인
- 3.2 공인대회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KARA의 제반 규정에 정통해야 한다.
- 3.3 공인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당해 연도 대회운영에 필요한 30%에 상당하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3.4 KARA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

제4조 신청서류

대회주최자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 기업, 개인은 아래의 서류를 국제대회는 3개월 전, 국내대회는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4.1 대회주최자 등록신청서.
- 4.2 사업자 등록증(법인, 일반 사업자).
- 4.3 당해 연도 대회운영계획서.
- 4.4 대표자 인감증명 1부.
- 4.5 대표자 사진 1매.

제5조 대회주최자의 승인

- 5.1 대회주최자의 승인은 KARA 사무국과 이사 5인 이상 심의 후 과반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 5.2 등록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 직접 제출한다.
- 5.3 KARA로부터 승인 받은 대회주최자의 소유권을 2019년 1월 1일부터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기존 대회주최자 포함).
- 5.4 FIA 또는 KARA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경기장에서 대회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대회주최자의 자격 심사

KARA는 사무국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 6.1 대회 주최능력과 운영능력.
- 6.2 제반 규정의 준수와 의무 이행의 실행 능력.
- 6.3 기타 KARA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대회주최자의 자격 제한

KARA는 등록을 신청한 대회주최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대회의 횟수, 대회의 명칭, 종류, 대회 카테고리, 대회클래스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등록비

대회주최자 등록을 신청한 자는 KARA가 등록을 허가함과 동시에 KARA가 정

한 등록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대회주최자 A : 50,000,000원
- 대회주최자 B : 5,000,000원 / 연간 갱신비 : 1,000,000원
- 대회주최자 C : 500,000원 / 연간 갱신비 : 500,000원

본 대회주최자 등록비는 대회주최자 자격 상실 및 취소 시 반환되지 않는다.

제9조 유효기간 및 연장

- 9.1 KARA로부터 등록을 허가 받은 대회주최자 A, B, C의 자격 유효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공인대회를 개최했을 시 자동 연장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공인대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KARA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이 정지 및 상실될 수 있다.

제10조 대회주최자 자격의 상실

대회주최자 자격을 인정 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KARA는 대회주최자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 10.1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KARA가 요청한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 10.2 정당한 이유 없이 개최하고자 한 대회를 취소하였을 때.
- 10.3 정당한 이유 없이 매년 한 대회도 개최하지 않았을 때.
- 10.4 정당한 이유 없이 대회주최자로서의 활동이 전혀 없었을 때.
- 10.5 타 대회주최자의 업무 및 대회 개최에 피해를 가할 경우.
- 10.6 대회의 준비 또는 대회 후 처리 및 해당 대회의 공인을 이용하여 지역 및 일반인에게 인적, 물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 10.7 KARA 및 FIA의 명예나 권위를 실추하거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 10.8 모터스포츠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 10.9 기타 KARA 사무국과 KARA가 지정한 협의체에서 대회주최자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 10.10 대회주최자 B, C의 경우 해당 연도 갱신비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 10.11 대회주최자가 라운드 대회공인비를 60일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 상실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10.12 KAR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를 개최할 경우 벌칙이 부여될 수 있다.

제11조 변동사항의 보고 의무

대회주최자로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 첨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사유를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서 KARA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회주최자의 특전

- 12.1 공인대회를 주최할 자격을 갖는다. 단, KARA 사무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 12.2 KARA의 국내스포츠캘린더에 기재, 등록될 수 있다.
- 12.3 대회주최자 A가 국제대회 개최 시 FIA 국제스포츠캘린더 등록 신청 자격을 갖는다.
- 12.4 KARA로부터 모터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12.5 라이선스 발급은 KARA가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
- 12.6 공인대회의 개최에 관하여 등록 팀, 단체, 대회주최자 상호 간의 협조를 하도록 한다.

제13조 벌칙

대회주최자는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국내스포츠규정, 동 부칙, 대회 특별규정, KARA의 기관지나 KARA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포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 대회 주최허가, 부대조건, 공식통지, 특별규정, 부적절한 대회일정 및 장소 변경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